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 사 건 2014가단42519 손해배상
- 원 고 이○태
- 서울 용산구 원효로 195
- 피 고 1. 전○○
-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3안길
2. 남궁○
- 최후주소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 이○○
- 최후주소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6길
4. 엄○○
- 서울 구로구 공원로11가길
5. 장○○
-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6. 안○○
- 최후주소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중앙로225번길
7. 심○○
-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171번길 20
8. 김○○

광주시 통미로104번길

변 론 종 결 2016. 3. 22.

판 결 선 고 2016. 4. 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엄○○은 5,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8.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장○○은 5,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김○○은 5,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엄○○, 장○○, 김○○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전○○, 남궁○, 이○○, 안○○, 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엄○○, 장○○,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원고와 피고 전○○, 남궁○, 이○○, 안○○, 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전○○는 5,980,000원, 피고 남궁○은 5,990,000원, 피고 이○○는 5,990,000원, 피고 엄○○는 5,980,000원, 피고 장○○은 5,990,000원, 피고 안○○는 5,990,000원, 피고 심○○는 3,810,000원, 피고 김○○은 5,99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각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9. 19:10경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였다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라는 안내창을 보고 그 요구에 따라 원고의 각종 정보를 입력하였다.

나. 그러자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였고, 원고는 그 요구에 따라 휴대폰을 꺼두었다.

다. 원고가 휴대폰을 꺼두었던 동안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원고의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었고,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들의 계좌로 합계 63,680,000원(피고 전○○에게 5,980,000원, 구○○에게 11,970,000원, 피고 남궁○에게 5,990,000원, 피고 이○○에게 5,990,000원, 피고 엄○○에게 5,980,000원, 피고 장○○에게 5,990,000원, 피고 안○○에게 5,990,000원, CUIZHELO에게 5,990,000원, 피고 심○○에게 3,810,000원, 피고 김○○에게 5,990,000원)이 출금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전○○, 남궁○, 이○○, 안○○, 심○○ : 갑 제1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엄○○, 장○○, 김○○ : 자백간주

2. 원고의 청구

피고들이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원고에 대한 파밍(컴퓨터에 가짜 은행사이트로 유도하는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금융정보를 빼낸 후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수법) 범죄에 이용함으로써 원고가 합계금 63,68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들의 행위에 의하여 성명불상자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피고 엄○○, 장○○, 김○○에 대한 청구

피고 엄○○, 장○○, 김○○은 소장 부분을 송달받고 나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엄○○, 장○○, 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4. 피고 전○○, 남궁○, 이○○, 안○○, 심○○에 대한 청구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파밍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로써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의 접근매체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돈을 이체하기에 이른 것이 아니고, 피고들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원고가 이미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피고들의 접근매체 교부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489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 전○○, 남궁○, 이○○, 안○○, 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엄○○, 장○○, 김○○에 대한 청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전○○, 남궁○, 이○○, 안○○, 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민